

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0 - 35호

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

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,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. 4. 16.

방송통신위원회

1. 심사대상 신청인

○ 재허가 대상

방송사명	남면유선방송사	대표자	김 두 평
방송구역	남면 일원	허가유효기간	2007.05.26 ~ 2010.05.25.
비용	가입설치비 40,000원 월수신료 4,000원 이전비 15,000원	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	종합유선방송사업자 (주)한국케이블TV전남동부방송

방송사명	청암유선방송사	대표자	김 중 곤
방송구역	하동군 청암면 일부(공항, 회신, 위태리 제외)	허가유효기간	2007.05.26 ~ 2010.05.25.
비용	가입설치비 40,000원 월수신료 4,000원 이전비 15,000원	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	종합유선방송사업자 (주)서경방송

방송사명	황강유선방송사	대표자	정 종 태
방송구역	합천군 대병면, 용주면 전역	허가유효기간	2007.05.26 ~ 2010.05.25.
비용	가입설치비 40,000원 월수신료 4,000원 이전비 15,000원	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	종합유선방송사업자 (주)씨제이헬로비전가야방송

방송사명	가덕유선방송사	대표자	김 영 호
방송구역	부산 강서구 천가동 전역	허가유효기간	2007.06.01 ~ 2010.05.31.
비용	가입설치비 40,000원 월수신료 4,000원 이전비 15,000원	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	종합유선방송사업자 (주)티브로드낙동방송

방송사명	교동유선방송사	대표자	박 상 신
방송구역	강화군 교동면 일원	허가유효기간	2007.06.15 ~ 2010.06.14.
비용	가입설치비 40,000원 월수신료 4,000원 이전비 15,000원	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	종합유선방송사업자 (주)티브로드서해방송

2. 의견 제출기간

- 게재일로부터 14일간

3. 제출의견

- 재허가 대상 : 공지채널 방송내용, 요금, 서비스,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모든 내용

4. 제출방식 : 우편, 팩스, 전자우편(E-mail)

- 우편 : (110-777)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
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사업 담당자 앞
- 팩스 : 02 - 750 - 2469
- 전자우편 : sangyongk@kcc.go.kr

5.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,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.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(02-750-2459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끝.